

2022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- 면접시험 진행절차 안내 -

□ 면접진행절차

① 응시자 교육/ 각종 서식 작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출석 확인 및 면접시험 응시요령 교육 ▶ 경험·상황 면접 과제 작성(20분) ▶ 면접시험 평정표(2매) 작성(p.3 예시 참조) 	응시자 대기장
↓		
② 5분 발표 과제 검토	▶ 조별 응시순서에 따라 별도장소에서 5분 발표 과제 검토(10분)	발표문 검토장
↓		
③ 신분 확인	▶ 시험관리관에게 응시표와 신분증을 제출한 후 본인 여부 확인	면접장
↓		
④ 입실	▶ 면접시험 평정표를 본인기준 오른쪽 면접위원에게 제출한 뒤 착석	면접실
↓		
⑤ 면접	▶ 총 30분 이내: 5분 발표(10분 내외) + 경험·상황 면접(20분 내외)	면접실

□ 면접방법 안내

① 경험·상황 면접 과제 작성(20분)

응시자 대기장	➔	전체 응시자가 응시자 대기장에서 제시된 관련 과제 검토
---------	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② 5분 발표 과제 검토(10분)

발표문 검토장	➔	각 조별 응시순서에 따라 발표문 검토장에서 제시된 관련 과제 검토
---------	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③ 본인 여부 확인

면접장	➔	해당 면접조 담당 시험관리관에게 응시표 및 신분증 제출
-----	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④ 대면 면접 실시(30분)

면접실	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5분 발표(5분 이내) + 후속 질의·응답(5분 이내) · 경험·상황 면접(20분 이내)
-----	---	--

□ 면접시험 평정표 제출

- 면접실에 입실하면 면접시험 평정표를 오른쪽에 있는 면접위원에게 제출한 뒤, 본인 좌석에 착석

□ 5분 발표 및 경험·상황 면접(30분)

- 5분 발표: 5분 발표(5분 내외) 및 후속 질의·응답(5분 내외)
- 5분 발표는 타 시험실에 방해(소음)가 되지 않도록 본인 좌석에 착석하여 발표, 5분 발표 과제는 본인이 소지하여 발표에 활용
- 경험·상황 면접: 5분 발표에 이어서 바로 경험·상황 면접 실시(약 20분 내외)
- 경험·상황 면접 과제 작성문을 바탕으로 질의·응답을 통하여 공무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공직가치·전문성 등을 평가 *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규정한 5개 평정요소별로 평가(붙임 참조)
- **경험 면접은 임용 이후 근무하고 싶은 부처(기관)와 담당하고 싶은 직무(정책)에 대해 기술하고, 응시분야 관련 이해도와 교과목 수강(전문도서 자기학습 등 포함), 각종 활동 등 해당 분야의 직무수행능력 및 전문성 함양을 위해 평소 준비한 노력과 경험 등을 평가** * **경험 면접은 전 직렬 동일한 문제가 출제됩니다**

□ 면접 관련 참고사항

○ 공정하고 엄정한 면접시험 집행

- 면접위원의 선입견을 배제하기 위해 2005년부터 응시원서에서 학력란을 폐지하였으며, 응시자의 필기시험 성적을 면접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.
- 또한 면접위원 선정(시험출제과)과 면접시험 시행(공개채용1과)을 독립·분리하여 운영하고 있으며,
- 엄선된 면접위원 명단은 면접당일까지 외부와 일체 격리된 국가고시센터에서 대외비에 준하여 관리하다가 면접당일에 면접시험장소로 인계되며,
- 면접시험 시행부서 통제 하에 면접위원을 무작위 추첨하여 각 면접조에 배정합니다.
- 면접조가 최종 확정된 후에도 면접위원과 응시자들에게 각 제척·기피·회피 사유 해당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, 면접시험장에서도 응시자와 면접위원이 접촉할 수 없도록 철저히 통제하여 공정한 시험진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.

○ 최종 합격자 결정 기준

- 면접위원 2명의 평가내용을 종합한 면접시험 평정결과(판정등급)와 필기시험 성적에 따라 최종 합격자 결정

◇ 최종 합격자 결정: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5조 제⑤항

- ▶ (우수) 필기시험 성적순위에 관계없이 '합격'
- ▶ (보통) "우수" 등급을 받은 응시자 수를 포함하여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필기시험 성적순으로 '합격'
- ▶ (미흡) 필기시험 성적순위에 관계없이 '불합격'

○ 추가 면접 실시

-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5조 제④항에 따라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 면접시험(심층면접) 실시

- ▶ "우수" 등급을 받은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
- ▶ "미흡" 등급을 받은 응시자의 수가 탈락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

2022 년도 9급 공개채용 면접시험 평정표

필 기 적 재 정 용 관	(예시문) : 본인은 (응시자 성명)임을 확인함	직 령(류)	행정직(일반행정 전국·일반)
	본인필적 : 본인은 홍길동임을 확인함	응시번호	0001
		성 명	홍길동
		생년월일	1022
		자필성명	홍길동

평 정 요 소	위 원 평 정								
	상			중			하		
가.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	○			○			○		
나.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	○			○			○		
다.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	○			○			○		
라. 예의, 품행 및 성실성	○			○			○		
마. 창의력,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	○			○			○		
계	①	②	③	①	②	③	①	②	③
	④	⑤	⑥	④	⑤	⑥	④	⑤	⑥
비고:	시 공 간								
1조	면접위원			성명			서명		



□ 시험위원 유의사항

- (1) 우수 :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모두를 "상"으로 평정한 경우
- (2) 미흡 :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"하"로 평정한 경우와,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"하"로 평정한 경우
- (3) 보통 : "우수"와 "미흡" 외의 경우